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02 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· 이용빈 ·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48조제2항, 제59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8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59조제3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업무계획·예산 및 결산)	제48조(업무계획·예산 및 결산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	②
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	
결산서· <u>대차대조표</u> 및 손익계	<u>재무상태표</u>
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	
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	
하여야 한다.	,
제59조(기금의 회계 및 결산) ①	제59조(기금의 회계 및 결산) ①
· ② (생 략)	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	③
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	
결산서· <u>대차대조표</u> 및 손익계	<u>재무상태표</u>
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	
제출하여야 한다.	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